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농촌부령

『원양어업관리규정』은 2019년 농업농촌부 제12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 되어 2020년 4월 1일 부로 시행함.

2020.02.10

원양어업관리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원양어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와 원양어업기업 및 그 종사자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양어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 보호를 위해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및 관련법률, 행정규정에 의거해 이 규정을 정한다.

제 2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원양어업’은 중화인민공화국국민, 법인 혹은 기타조직이 공해와 다른 국가의 관할 해역에서 해양조업이나 그에 수반되는 가공, 보급, 산업 운송 등의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황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종사하는 어업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 3조 국가는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규모의 합리화, 과학적 배치, 장비의 고도화, 부속 사업의 개선, 관리의 표준화, 생산 안전 등을 위한 현대화된 원양어업 산업 시스템의 수립을 지원한다.

제 4조 농업농촌부가 주관하여 전국 원양어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전국 원양어업의 계획, 조직, 관리를 책임지며 국무원 및 기타 유관 부서는 원양어업기업이 집행하는 국가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상 황에 대해 감독한다.

제 5조 국가는 원양어업기업이 법에 의거해 원양어업조합을 설립하는 것

을 장려하며 업계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제 6조 농업농촌부는 원양어업 시행사업 심사관리와 기업자격 인정제도, 원양어업 선박 및 선원에 대해 법에 따라 관리 감독한다.

제 7조 원양어업 사업 신청심사와 기업자격 확인은 농업농촌부 원양어업 관리시스템이 처리한다.

신청 당사자는 원양어업 선박검증 증명서와 어업어선 등록증 등 법정 자격증명서, 소유증명을 제출하여 전국 선박 동향관리시스템, 원양어업관리시스템 혹은 부서 간 대조 검증으로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다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 2장 원양어업 사업신청 및 심사

제 8조 동시에 아래의 조건을 가진 기업은 원양어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원양어업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중국 시장관리 감독부서에 등록이 되어 독립적인 법인 자격이 있는 자. 그 범위는 해양(원양)조업을 포함한다.
- ② 원양어업에 적합하고 합법적인 어선을 가진 자
- ③ 사업운영과 예기치 못한 사고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
- ④ 원양어업 정책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국외사무 혹은 원양어업생산 혹은 관리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관리인
- ⑤ 신청 전 3년간 농업농촌부에 의해 원양어업 자격등록이 취소된 적이 없고 기업 주요 책임자와 사업 주요 책임자가 신청 전 3년 동안 원양어업기업자격을 기업주요 책임자격 및 사업책임 등록을 취소당한 적이 없는 자

제 9조 본 규정 제 8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원양사업을 전개할 수 있으며 소재지 성급 인민 정부 어업행정 주관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성급 인민 정부 어업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 동의 후 농업농촌부 심사에 신청한다. 중앙정부 직속 기업은 직접 농업농촌부에 신청한다. 성급 인민 정부 어업정책 주관부서는 10일 이내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제10조 원양어업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 ① 항목의 신청. 신청 보고에는 반드시 기업 기본 상황과 조

건, 사업 조직과 경영관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이미 원양어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원양어업 사업신청 기본정보(부록 1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 ③ 타국의 관할 해역에 가서 조업하는 것은 외국과의 협력 협의서나 타국 정부 주관부서의 입어 동의 증명서, 중국 내 사업 소재지 공관(대사관/영사관)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단독 자본기업 또는 합자 기업을 설립하는 것 또한 중국 상무 행정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기업 국외 투자 증서》와 입어국의 관련 정부 부서에서 발급한 기업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해에서 조업하는 기업은 《공해어업조업 허가증》을 신청한다. 신청서(부록 2 참조).
- ④ 어선 소유증, 등록(국적) 증서, 원양어선 검증서.
제조, 개조, 구입 또는 수입된 전문 원양어선은 농업농촌부의 《어업 선망 도구 지표증인서》를, 비전문 원양어선(국내 유효어업 면허를 가지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동시에 국내 《해양어업 조업허가증》을 제출한다. 수입 어선은 국가 전기기계 수출입 관공실의 승인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⑤ 농업농촌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11조 농업농촌부는 본 규정 제10조의 요구에 부합하는 원양어업사업의 신청을 받아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 시기를 연장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 그 이유를 신속히 알려줘야 한다.

제 12조 이미 시행된 원양어업 사업에 대해 농업농촌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각각 확인한다.

- ① 국내 항구에서 출항한 어선은 해사 행정 주관부서가 교부한 《국제 항행 선박 출입 허가증》을 이를 확인한다.
- ② 바다에서 어장을 옮기거나 어선의 소유주를 변경한 어선은 원양어업 사업승인 서류에 의거하여 이를 확인한다.
- ③ 선박증명서의 만기가 도래한 어선은 발행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인증서에 의거하여 이를 확인한다.
- ④ 어선의 국적 변경은 어선의 중국 국적 정지 또는 말소 증

명, 입어국 정부 주무부처가 발급한 조업허가증과 어선등록증, 검증서 및 그 서류의 중국어 번역본으로 이를 확인한다.

제 13조 농업농촌부의 어업 사업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기업은 승인 서류와 기타 관련 자료로 원양어업 선박 및 선원 증서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조 타국 관할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책임자는 농업농촌부 원양어업사업승인 서류를 가지고 중국 주재대(영)사관에 등록해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5조 기업은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농업농촌부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소재지의 성급 인민 정부 어업행정 주관부서 등에 아래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성급 인민 정부 어업행정 주관부서는 농업농촌부에 보고한다.

- ① 각 어선의 어획량, 주요 품종, 생산액 등이 생산시 포함된다.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요구에 따라 매월 10일 이전에 지난달의 생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② 자체 수산물 운송 상황은 세관 본서와 농업농촌부의 요청에 따라 보고한다.
- ③ 농업농촌부 또는 국제어업관리기구는 기타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조 원양어업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업 국가(지역)나 해역, 조업 유형, 입어 방식, 어선 수(어선 교체 포함), 어선 소유자, 단독자본 또는 합자 기업의 재설립 등은 이 규정 제10조에 규정된 변경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본 규정 제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농업농촌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 중 조업 국가를 변경하는 것은 제10조 제③항에 규정한 자료 외에 기존 사업 소재국 대사관에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 17조 프로젝트가 종료되거나 집행이 완료되면 원양어업기업은 즉시 성급 인민 정부 어업행정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프로젝트 수행 상황을 결산해서 제출하며 성급 인민 정부 어업행정 주관부서를 거쳐 농업농촌부에서 원양어업 사업 종료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원양어업기업은 사업을 중단한 어선을 국내로 돌려보내고 어선이 입국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사 행정 주관부서가 작성한 선박

입국 수속 완료통지서와 어업항구정책감독부서가 제출한 어선 선박 증명서를 농업농촌부에 제출해야 한다.

원양어선의 원양어업종료 또는 원양어업종결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 기업은 사업종료 또는 정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어선을 적절히 처분하여야 하며, 객관적 이유로 18개월 내에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처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장 36개월은 넘기지 않아야 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성급 인민 정부의 어업 행정 주관부서에서 《어업선박 등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다.

제 3장 원양어업기업 자격인정 및 연간 심사

제 18조 농업농촌부는 이미 농업농촌부의 승인을 받아 원양어업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 대해 생산경영이 건전하고 관련 법률, 법규,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게 원양어업기업자격을 부여하고 《농업농촌부 원양어업 기업 자격증》을 수여한다. 《농업농촌부 원양어업 기업 자격증》을 취득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 19조 농업농촌부는 원양어업기업자격과 원양어업사업에 대해 연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 합격한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농업농촌부 원양어업 기업 자격증》을 교부하고 심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원양어업사업의 연속을 확인한다.(원양어업기업자격 및 심사등록표는 부록 3 참고)

제 4장 원양어선 선박과 선원

제20조 원양어선은 어업 선박 검사 기구의 기술 검사에 합격한 후 어업 및 어항 감독 부서의 법에 의거해 등록을 하여 관련 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우리나라 법률, 법규 및 관련 국제 조약의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어선은 원양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없다.

해당 지역 어업관리조직이 적발한 불법 무신고 어업활동을 단속하지 않는 어선을 이용해 원양어업 생산에 종사할 수 없다.

제 21조 원양어선의 제조, 갱신, 개조, 구입, 수입 또는 비전문 원양어선의 갱신 개조 원양어업 전개는 반드시 《어업어업 허가 관리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업농촌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화된 원양어선은 반드시 폐기 처분해야 한다.

타 국가 법률 규정에 따르면 원양어선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져야 해당 국가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으며 어업 선박 등록 방법에 따라 중국 국적 등록을 중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 22조 원양어업 선박이 국가가 대외개방한 항구로 입출항을 하는 경우 등록(국적)증서, 검사증서, 《공해어업조업허가증》 및 그 선박이 적용받는 국제 공약의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23조 우리나라에 등록된 원양어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고 타국에 등록된 원양어선은 등록된 국가 규정에 따라 게양하고 표시한다. 국제어업기구는 원양어선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

제 24조 전문 원양어선은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공해나 타국의 관할 해역에 가서 어로 작업을 허가받은 비전문 원양어선은 출국 전 《공해어업조업허가증》을 발행기관에 일시 제출하고 원양어업 조업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의 조업 활동은 금지된다. 원양어업종료 및 처리 수속 후에 《어업 조업허가 관리규정》에 따라 발행기관에서 《해양어업면허》를 다시 받은 후에 국내 해역에서 어업생산에 다시 종사할 수 있다.

제 25조 원양어선은 규정에 따라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의 감독과 조사를 받는다.

제 26조 원양어업 선박은 규정에 따라 선원을 배치하고 관리한다.

제 5장 안전생산

제 27조 원양어업기업은 안전생산에 책임을 가지고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생산관리자를 배치해 안전생산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원양어업기업의 법정 대표자와 주요 책임자는 해당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가진다. 원양어업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프로젝트의 집행에 대하여 생산경영 관리, 어선 활동과 선원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며 원양어선 선장은 어선의 항해, 생산작업, 정박 안전 등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

제 28조 원양어업기업은 그들이 채용한 원양어업 선원이나 원양어업 선원의 소속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선원의 보험을 위해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고 선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선

원에게 부당한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원양어업기업은 원양어업 선원의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으며 선원은 농업농촌부 원양어업사업승인서류에 기재된 선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9조 원양어업기업은 출국하기 전 반드시 선원들에 대해 안전 조업, 외사규율, 법률지식 등을 교육해야 한다. 원양어업 선원들은 국외에서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률과 법규와 국제 조약, 협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과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제 30조 원양어선 선장은 《어업선원 관리방법》에 규정된 관련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어선의 정상적인 항행과 법에 따라 어업을 진행해야 한다. 타국의 관할 수역에 불법적으로 들어가 조업하는 것을 엄금한다.

중국이 가입한 국제 협약과 역내 어업 기구의 요청에 따라 원양어선이 공해나 타국의 관할 수역에서 검사를 받을 때 선장은 그에 따라 심사하여 집행해야 한다.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 집행자는 어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회피하거나 폭력이나 위협한 방법으로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31조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농업농촌부 원양어업프로젝트 승인서류와 《공해어업조업허가증》에 따라 조업 가능 해역, 유형, 시한, 품종과 할당량에 따라 조업을 해야 하며 조업 시에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 조약,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관할 해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우리나라와 체결한 어업협정 및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야 한다. 원양어선은 미허가 조업 해역의 외부 경계에 완충거리를 유지하면서 해당 국가의 분쟁 해역에서의 조업을 피해야 한다.

제 32조 원양어선은 다른 나라의 관할 수역을 통과하기 전에 어획물을 적절히 보존하고 어구를 묶어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통보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관할 수역을 통과할 때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하여 통과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에는 어떠한 어업생산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어선이 다른 나라 항구 내에서 혹은 다른 나라의 관할 해역을 통과할 때 배 위의 어획물이나 기타 다른 것들을 버려서는 안 되며 기름 찌꺼기, 폐수 및 기타 해양 생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6장 감독관리

제 33조 원양어업기업, 선박, 선원이 불법적으로 보고 없이 관할을 받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 34조 농업농촌부는 원양어업 종사자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포한다. 심각한 위법행위, 조업 안전과 관련된 사고 책임이 있거나 혹은 원양어업 외국사무와 관련된 사건의 주요 관리자, 책임자 및 선장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관리를 받는다.
- 제 35조 농업농촌부는 필요에 따라 원양어선의 위치와 어획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원양어선은 농업농촌부가 마련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어선감시시스템(VMS)을 설치하고 기술교육 합격증이 있는 승조원을 배치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농촌부는 관련 국제기구의 요구나 관리 필요에 따라 원양어선에 국가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다. 원양어업 기업과 원양어선은 국가 참관인이나 관련 국제어업기구에서 파견한 참관인을 수용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참관인을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없다.
- 제 36조 두 개 이상의 원양어업기업이 같은 국가(지역)나 해역에서 조업하거나 같은 품종, 같은 유형의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 스스로 조율하는 자율 체제를 갖추고 조합(협회)의 지침을 받아 정부 유관부서의 조정과 관리에 협조해야 한다.
- 제 37조 원양어업기업, 어선과 선원이 국외에서 외국사무와 관련되었을 때에는 즉시 농업농촌부 및 해당 기업이 소재한 성급 인민 정부의 어업행정 주무부서와 관련 대사관에 보고해야 하며 성급 인민 정부의 어업행정 관련 주무부서는 즉시 상황을 조사하여 처리의견을 성급 인민 정부와 농업농촌부에 보고해야 한다. 농업농촌부가 처리의견을 조율하여 해외공사관에 통지한다. 주요 외사 사무가 발생하면 교섭을 위해 농업농촌부 상무부가 처리의견을 내고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 제 38조 각급 인민 정부의 어업 행정 주무부서와 그 소속 어정어항관리 감독기구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원양어선의 국내 어업항의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여 어선의 입항 보고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국제 어업 기구에 의해 불법 및 무허가조업을 하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어업 활동 선박명단에 포함된 선박의 입항은 긴급구조, 선박 고장, 조난, 태풍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상기 명시한 특수한 상황으로 불법적으로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항구가 소재한 성급 인민 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서가

등급 항구, 세관, 출입국관리부서가 농업농촌부, 외교부 등 국무원 관련 부서의 지도 하에 우리나라 법률, 행정법규 및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비준한 관련 국제 조약에 의거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 7장 처벌규정

제 39조 원양어업기업, 어선 혹은 선원이 아래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급 이상 인민 정부의 어업 행정 주무부서 혹은 소속된 어업정책항구관리감독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 《중화인민공화국야생동물보호법》과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해 처벌을 내린다.

- ① 농업농촌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양어업생산을 하거나 《공해어업조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공해조업생산을 하는 경우
- ② 원양어업프로그램을 신고 또는 사업전개 시 사실을 숨기고 위조하는 경우
- ③ 농업농촌부 혹은 《공해어업조업허가증》규정의 조업 형태, 장소, 기한, 품종, 조업 할당량에 따르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타국의 관할 해역에서 조업을 한 경우
- ④ 입어국 또는 관할권이 있는 지역 어업 관리 기관이 금지한 어구(어망), 어법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거나 입어국 또는 관할권이 있는 지역 어업 관리 기관이 조업을 금지한 어종, 희귀 멸종 위기 수생 야생동물 또는 기타 해양 생물을 잡는 경우
- ⑤ 실효적인 선박증명을 얻지 않거나 원양어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본 규정에 규정된 파견 원양어업 선원의 수를 위반한 경우
- ⑥ 어업 행정 주관부서의 감독관리를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공해 타국 관할 해역에서 관할권이 있는 법 집행자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 ⑦ 규정에 따라 상황을 보고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고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어획물을 작성하지 않고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 ⑧ 국가 감찰원 또는 관할권이 있는 지역어업관리기구에서 파견된 감찰원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⑨ 선박의 명칭, 식별번호, 어선표시, 어선의 위치측정을 방해

하거나 어선 자동인식 등의 장비를 고의로 폐쇄하거나 허위정보를 알리지 못하도록 고의로 함명, 식별번호, 어선표시, 어선의 계수를 변경하거나 어선의 본체를 무단으로 교체하는 경우

- ⑩ 관련 국제어업기구에 의해 불법, 무신고, 통제받지 않는 어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협조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⑪ 중대한 안전생산 책임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⑫ 외부와 관련된 위반 사건이 발생하여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
- ⑬ 기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

제 40조 농업농촌부 원양어업기업 자격이 일시 정지된 기업은 성급 인민정부의 어업행정 주관부서와 농업농촌부의 심사를 거쳐 원양어업기업 자격과 소속어선인 원양어업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1년 동안 개선하여 심사 신청을 해도 불합격을 받는 경우 농업농촌부 원양어업기업 자격을 박탈한다.

제 41조 당사자들은 어업행정 처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2조 각급 인민 정부의 어업행정 주관부서 실무자가 법정의무 불이행, 직무유기, 사사로운 부정행위 등 아직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에 관해서 해당 부서 또는 상급 기관이 주관하여 행정 처분을 내린다.

제 8장 부칙

제 43조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원양어선’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 법인, 기타 모든 조직 및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업 선박을 말하며 조업 어선과 어업 보조선을 포함한다. 원양어선의 선원은 원양어선에서 일하는 모든 선원을 말하며 서비스 인원까지도 포함한다.

제 44조 본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농업부가 2003년 4월 18일 공포한 것과 2004년 7월 1일, 2016년 5월 30일 개정된 《원양어업관리규정》은 폐지한다.

부속자료 첨부1. 원양어업산업신청표

첨부2. 공해어업조업허가증 신청서

첨부3. 농업농촌부 원양어업기업 자격 및 사업 연간심사등록표

첨부4. 농업농촌부 원양어업기업 자격 및 사업 연간심사등록표(계속)